

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

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(☎ 044-201-3412)

- ▶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2013년 보다 무겁게 부과됩니다.
- 2013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,
- 개정 「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거래금액규모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* 과태료는 거래가액 기준 1억5천만 이하 500만원부터 ~ 10억원 초과시 3천만원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 >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

<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방지>

- ▶ 추진배경 : 부동산거래신고의 거짓신고 및 자료미제출 방지
- ▶ 주요내용 :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
 - 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처벌 강화
(과태료 3천만원 이하)
- ▶ 시행일 : 2013.12.5.